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52
----------	--------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남해석 위원 외 1명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23년~2026년도 마포구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안 제3조)

- 2023년 월정수당 : 월 2,655,700원

- 2024~2026년도 월정수당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 증액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없음

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월 2,480,350원”을 “월 2,655,7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2020년부터”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월정수당) ① (생략)</p> <p>② 월정수당은 월 2,480,35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③ <u>2020년부터</u>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33조에</u> ----- ----- -----.</p> <p>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 월정수당은 월 2,655,700원으로 한다. ----- ----- -----</p> <p>③ <u>2024년부터 2026년까지</u>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p>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 결정 통보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 결정 통보서

수신 : 마포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3~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정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2026년도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상한액으로 정함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 2023년도 월정수당

- 2,655,700원(2022년도 월정수당 대비 1.4% 증액)

□ 2024~2026년도 월정수당

-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100% 증액

□ 2023~2026년도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2022. 10. 7.

마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